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 39 호 2015. 4.15(수)

공 고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폐지 조례안 공고.....1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 - 531호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폐지 조례안

1. 폐지이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부 예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 환경부 예규 제390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 지침」 활용

2. 주요내용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6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환경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09) 및 직접방문 등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폐지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